

석유사업법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

- 상공자원부 -

- 상공자원부는 석유사업기금제도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(에특회계)로 전환됨에 따라 석유사업법령상의 기금관련 조항을 정비하고, 석유사업법령에 의한 기업활동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한편, 그간 석유사업법령 운영과정에서 대두된 미비점 등을 보완토록 석유사업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일(화) 입법예고 하였다.
-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
 - 석유사업기금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에특회계법에 의한 일괄 관리가 되도록 하였고,
 - 그간 기금이 면제되어오던 윤활유, 액화천연가스, 발전용 저유황유에 대하여도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는 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장치는 마련하되 물가의 부담등을 고려하여 액화천연가스, 발전용 저유황유에 대하여는 당분간은 영세율을 적용토록 할 예정이며,
 - 또한 기업활동규제완화 차원에서
 - 수도권 석유일반대리점의 허가기준중 저장시설 기준을 1,500kl 이상에서 1,000kl이상으로 완화하고,
 - 석유정제업자의 중복된 수출입 계획신고 의무 등을 면제토록 하며,
 - 아스팔트를 석유수출입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자유화하고,
 - 나프타와 1년미만의 천연가스 수입계약은 정부 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,
 -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 수입시에는 기금징수를 유예토록 완화 할 예정이다.
 - 또한,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석유를 정량에 미달하게 판매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강화하고, 휘발유 규격을 이원화하여 승용차 차종에 부합하는 휘발유를 사용토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부여하며,
 - 신설 주유소에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타이어 공기주입 시설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토록 할 예정인데, 정부 관계자는 타이어에 적정 공기압력을 유지할 경우,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, 약 3%의 휘발유 절약과 타이어 마모방지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. ●